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정폭력 이력 조사 및 당사자 분리 조사 근거 마련 등〉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81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3.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발의자 : 민홍철의원 등 14인
2. 발의일 : 2024. 12. 24.
3. 회부일 : 2024.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① 가사조사가관이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과 가정폭력 이력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② 조정 전 가사조사가관의 사실조사 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사조사가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르도록 하고, ③ 친권자 지정 등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여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	제6조(가사조사관) ①·② (현행과 같음)

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¹⁾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조정 원칙)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

③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과 가정폭력 이력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때 당사자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조정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終局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여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가정폭력 이력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조사(안 제6 조제3항)

① 개정안의 내용 및 효과

- 1)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여 가정법원 스스로 쉽사리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 당사자에게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 조사명령을 발하여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보다는 가정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조사가 더 바람직한 사건 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2010, 119면).

현행 「가사소송법」 제6조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8조²⁾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가사조사관에게 지시하는 조사명령은 가사조사관에게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에 착수·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판장 등의 조사명령이 없으면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³⁾

또한, 가사조사관은 위 조사명령을 받으면 「가사소송규칙」 제9조⁴⁾에 따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하면서(제1항),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함(제2항).

개정안은 「가사소송규칙」 제9조제2항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가정폭력 이력도 가사조사관의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과 현행법 제6조제1항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

2)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3) 박동섭, 『주식 가사소송법(3전정판)』, 박영사, 2004, 41면 참조.

4) 「가사소송규칙」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정담당판사가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 명령을 내린 뒤, 가사조사관은 해당 명령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이력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위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한 경우, 가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고려함으로써 가사소송 절차 진행 도중 또는 가사소송 종료 이후 당사자 또는 자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가정폭력 이력에 관한 조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나, 현행법령에 따르더라도 재판장 등이 가사조사관에게 가정폭력 이력을 조사하게 명할 수 있고, 그러한 명령이 없더라도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가정폭력 이력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나, 개정안은 가사조사관이 필요에 따라 가정폭력 이력 등을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면이 있는바, 안 제56조제2항처럼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가정폭력 ‘이력’이 가정폭력범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지,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단순히 신고된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혹은 이러한 신고 등이 없이도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등 그 범위가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 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②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접수된 가사 사건에 대해 각급 가정재판소에 소속된 경험이 풍부한 차석조사관, 총괄 또는 주임조사관⁵⁾이 해당 사건에 조사관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어떤 절차가 적합할지 선별하는 업무를 하는데, 폭력 등이 의심되는 사건은 의학·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통한 조사와 진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함.⁶⁾ 그리고 일본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일본 가사사건절차법 제58조제1항⁷⁾ 및 가사사건절차규칙 제44조⁸⁾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성격, 경력, 생활 상황, 재산 상태, 가정 환경 및 기타 환경 등에 대해 의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및 기타 전문

5)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일반사무직과 직렬이 분리되어, 최고재판소의 가정국을 통해 전국적으로 조직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음. 각급 가정재판소 내에서 조사관의 조직은 수석조사관의 지휘 하에 차석조사관, 총괄주임조사관, 주임조사관, 조사관, 조사관보로 구성되어 있음(안문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17, 114면).

6) 안문희, 앞의 책, 135면.

7) 일본 가사사건절차법 제58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정재판소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사실조사의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가정재판소에 보고한다.

④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

8) 일본 가사사건절차규칙 제44조 사실조사는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성격, 경력, 생활 상황, 재산 상태, 가정 환경 및 기타 환경 등에 대해 의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및 기타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함.

미국은 가정법원의 전문 인력이 조정자 또는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정폭력 상담,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기관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미국에서의 전문 인력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조사관이 수행하는 사실조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⁹⁾

독일에서는 가정법원 내부에 조사관이나 상담자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가사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의사와 입장을 반영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절차보조인(Verfahrenspfleger), 즉 ‘자녀의 변호사(Anwalt des Kindes)’ 제도를 마련함.¹⁰⁾

(2)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분리 조사 근거 마련(안 제56조제2항)

현행 「가사소송법」 제50조¹¹⁾에 따라 재판상 이혼 등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안의 마련, 조정기일의 지정 및 당사자의 출석 순으로 진행됨.

9) 안문희, 앞의 책, 78면.

10) 안문희, 앞의 책, 98면.

11)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조정 절차에서 가해자를 대면하는 일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가사조사를 받은 후 먼저 귀가 조치된 가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¹²⁾

개정안은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서로 분리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 절차 등을 진행 중인 당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대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한편, 편안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의 분리 조사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이에 따라야 하는데, 당사자가 막연히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분리 조사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476호, 2025. 4. 2. 시행) 제13조¹³⁾는 조사과정에서 범

12) 허민숙,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제61호, 2020, 18면.

1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조사·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등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

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조사 시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3) 자녀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의 조정 시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 확인 명시(안 제58조제3항)

현행 「가사소송법」 제58조제2항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여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제58조제2항의 조정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정 절차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력의 확인을 명시하여 해당 전력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 등으로 지정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미성년자녀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가정폭력 ‘이력’이 가정폭력범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것을

경을 조성하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최소화한다.

2.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소환조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한다.

말하는지,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단순히 신고된 사실도 의미하는지, 혹은 이러한 신고 등이 없이도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등 그 범위가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 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6조제3항과 제58조제3항의 가정폭력 이력과 아동학대 이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56조제2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분리 조사를 요청할 경우 신속한 사실조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정폭력 이력과 아동학대 이력의 의미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